



사단법인 한국과학시포럼

운 영 규 정

한국과학AI포럼(KSAIF) 운영규정

2026. 02. 24

제 1장 총칙

제1조 [목적]

본 운영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과학AI포럼(KSAIF)이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칙을 정하기 위함이다.

제2조 [적용범위]

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AIF 정관과 민법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.

제3조 [용어의 정의]

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며, 별도의 정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다.

제2장 회원

제4조 [회원의 종류]

KSAIF의 회원은 정관 제6조에 따라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, 정회원은 개인정회원과 단체정회원으로 세분한다.

제5조 [회원가입 절차]

-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다.
- 회원 가입은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가 지정한 위원회, 일반회원의 경우 사무국에서 자격요건을 심사·승인하고, 제6조에 따른 첫회비가 납부된 후에 완료된다.
-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사무국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회원 명부에 등재한다.

제6조 [회비]

- 회비는 연회비(정기회비)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.
- 연회비는 개인정회원 50,000원, 단체정회원 1,000,000원, 일반회원 10,000원으로 한다.
- 특별회비는 특정 목적을 위해 총회의 의결로 부과할 수 있다.
- 회비를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무국은 두 차례 이상 납부 요청을 하고, 이후에도 미납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7조 [의결권 행사]

1.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개인정회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.
2. 단체정회원은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인을 선임하여 대표자를 통해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.
3. 정회원은 위임장으로 다른 정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 위임장은 총회 개최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 [피선거권]

1. 개인정회원은 KSAIF의 임원·위원으로 선출될 피선거권을 가진다.
2. 단체정회원의 대표자와 일반회원은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.

제9조 [탈퇴 및 제명]

1. 회원은 정관 제8조에 따라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,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탈퇴 의사를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.
2. 탈퇴한 회원은 KSAIF의 기밀 정보를 유지하여야 하고,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받을 수 없다.
3. 회원은 사유가 있을 때 정관 제9조에 따라 제명될 수 있다.

제3장 임원 선임 및 회의 운영

제10조 [임원 선임 절차]

1. 임원의 종류와 정수, 임기 및 자격 요건은 정관 제10조 내지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2. 임원 후보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으며, 추천서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한다. 후보는 자신의 이력과 공약을 게시한다.
3. 임원의 선임은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며, 대면·서면·전자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. 투표 방식과 전자투표 시스템의 인증 절차는 이사회가 정하여 공지한다.
4. 개표 결과는 즉시 공표하고, 선임 임원 수와 득표수에 기반하여 당선자를 선정한다. 선출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통보한 후 취임한다.

제11조 [총회 운영]

1. 총회의 기능, 소집,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다.
2. 총회 소집권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단축 통지할 수 있다.
3. 총회 회의록은 총회의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된 서명날인인 2인이 서명 또는 전자서명한다. 회의록은 5년간 보관하며, 회원에게 공개한다.

제12조 [이사회 운영]

1. 이사회 기능, 소집,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22조 내지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2. 긴급한 사항 또는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안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.
3. 긴급한 사항 또는 서면·전자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결의의 방법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을 의결할 수 있다.

4.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된 서명날인인 2인이 서명 또는 전자서명한다.

제4장 사무국 운영

제13조 [사무국과 사무국장]

1. 정관 제27조에 따라 KSAIF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과 사무국장을 둔다.
2.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.
3. 사무국장 아래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.
4. 사무국의 조직 구성 및 변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5. 사무국장은 각 부서의 업무 조정을 총괄하고 인력 배치, 평가를 지휘한다.
6. 사무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의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 [사무국의 역할]

1. 회원 가입·탈퇴 절차 관리 및 회원명부 유지, 회비 징수와 관리 등의 회원 관리
2. 총회·이사회·위원회 회의 준비,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의 회의 지원
3. 예산 편성, 수입·지출 관리, 후원금·기부금 관리와 공시 등의 재정 관리
4. 웹사이트 관리, 홍보물 제작, 언론 대응, 외부 기관과의 협력 등의 홍보 및 대외 협력
5. 기타 이사회 또는 대표의장이 지정하는 업무

제15조 [사무국 직원의 채용 및 복무]

1. 사무국 직원은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분하며, 필요시 파견직·프리랜서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.
2. 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,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경력직 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.
3. 채용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인사규정에서 정한다.
4. 직원의 근무일·근무시간·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인사규정에서 정한다.
5. 직원은 직무 수행 중 이해상충을 피하고, 포럼의 재산과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.

제5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

제16조 [위원회]

1. KSAIF는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3개 이상 20개 이하로 둘 수 있으며, 각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2.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대표의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취임한다.
3.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17조 [고문]

본 단체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, 고문의 위촉과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6장 보칙

제19조 [내규의 제·개정과 시행]

본 내규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에 결정에 따른다. 제·개정된 규정은 총회에 통보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.

제20조 [준용]

본 내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관련 법령,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.